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12. 13.>

지도등 간행심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사용측량성과		축척		도엽명		
	간행목적						
	간행성과물		명칭		축척		
	간행예정일				간행부수		
	작업방법						
	축척별 지도활용도엽수						
	복제승인일						
년 월 일(승인번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지도 등을 간행하기 위하여 심사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표준작업방법서 1부 2. 성과심사용 간행물 2부	수수료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정한 바에 따름 (하단부 참조)
------	----------------------------------	---------------------------------------

작성방법 및 수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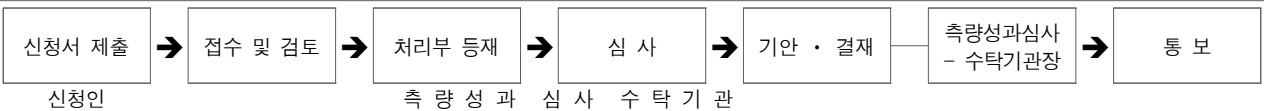
※ 작성방법

1. "간행목적"란에는 간행하려는 지도등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작업방법"란에는 작업범위, 색도, 인쇄사항 등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 지도등의 도엽당 심사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1,000, 1: 1,200 : 도엽당 중급기술인 1명의 임금단가의 7퍼센트
- 1: 5,000, 1: 10,000 : 도엽당 중급기술인 1명의 임금단가의 8퍼센트
- 1: 25,000 : 도엽당 중급기술인 1명의 임금단가의 9퍼센트
- 1: 50,000, 1: 100,000 : 도엽당 중급기술인 1명의 임금단가의 11퍼센트
- 1: 250,000, 1: 500,000, 1: 1,000,000 : 도엽당 중급기술인 1명의 임금단가의 10퍼센트
- 정밀도로지도 : km당 중급기술인 1명의 임금단가의 0.01퍼센트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60g/m²)